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및 협조('22.1.13.~)

1. 관련 :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6297(2021.12.30.)

2.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됨을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변경 내용

구 분	현 행	변 경	비고
검사 및 발급 시점	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※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	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※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	항만 입국자는 적용 제외(현행 유지)
미얀마 발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	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※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	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※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	

※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(붙임 참고)

나. 시행일 : '22.1.13.(목) 입국자부터 적용

※ 추후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등 안내자료 추가배포 예정

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(국·영문). 끝.

교 육 부 장



대학학사제도과장, 국제교육협력담당관, 교육국제화담당관, 국립국제교육원장, 고등교육기관전체

주무관

홍은진

행정사무관

장명현

코로나19대응 전결 2021.12.30.
학교상황총괄
과장 최보영

협조자

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((2021.12.30.)) 접수 ()
과-7097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/ <https://www.moe.go.kr>
교육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7142 전송 044-203-7023 / hej0722@korea.kr / 비공개